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
운용에 관한 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기금의 설치 및 용도 (안 제3조~제6조)
- 다. 기금의 관리 및 운용 (안 제7조)
-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(안 제8조~제9조)
- 마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 등 (안 제10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나. 예산조치: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 참석수당 지급.
- 다. 협의기관: 해당부서 없음.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 이유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금천구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운영 사항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(안 제3조~제5조)
- 2) 기금의 용도 (안 제6조)
- 3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(안 제8조~제9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기금 설치의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조례 제정의 몇 가지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함.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2항 위임 규정 따라 기금 설치 및 용도를 규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문제는 없으나, 기금의 구성에 있어 조성 목표액, 조달방안 등 재원 마련의 구체적 비용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
 - 2)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본 기금 설치를 통한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보며
 - 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 보며 해당 부서에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